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20172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20172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592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가합91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5928 판결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의 소송경과 및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증명방법,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B과 동업으로 C병원을 운영한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금으로 원심이 인용한 179,364,310원보다 많은 180,000,000원을 원고가 청구하였던 점,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배척되고 선택적으로 청구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179,364,3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 B, D과 공모하여 그들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위 B, D로 하여금 각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 또는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C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위와 같은 비용은 반환되어야 할 이득에서 공제될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C병원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환자들이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이득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부당이득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이득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이득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채무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새로운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 이득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